

감사인 선임 길라잡이 II

감사계약 전자보고 요령

2024.4.



금융감독원

목 차

I. 외부감사계약보고 시스템

1.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소개
2. 고유번호 발급
3.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접속

II. 감사인 선임보고서 제출

1. 회사개황 입력
2. 문서제출
3. 접수현황

III. 주요 질의사항

I. 외부감사계약보고 시스템

1.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소개

회사가 서면으로 제출하던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서류를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회사가 접수진행과정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전자보고가 의무화



금융은 튼튼하게

금융감독원은

급변하는 대내외 금융환경과 다양한 위험요인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DART 접수시스템 고유번호로 로그인



원격지원서비스



외감선임 및 제외 문의 02. 3145. 7767

기타 보고제도 문의 02. 3145. 7763

로그인 & 인증서 문의 국번없이 1332 (5번)

시스템(오류) 문의 02. 3145. 5463

1. 외부감사계약보고 시스템

2. 고유번호 발급

고유번호 발급신청

- 고유번호 미발급회사는 **DART접수 시스템** (<http://filer.fss.or.kr>)으로 고유번호 발급신청
 - 사후관리 등을 위해 신청 3단계에서 **'법인의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등록'** 선택을 권장
- * 고유번호 발급 관련 문의: 국번 없이 1332
⇒ 5, 1, 1을 순서대로 입력

고유번호 조회

- '신청결과 조회'** 탭을 이용하여 회사 고유 번호를 확인

* 법인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인증서 관리' 탭 화면에서 'DART인증서 발급'을 신청

DART 접수시스템

외부감사계약보고 | 신청사선정신청 | 사이트맵 | 원격지원서비스 | 로그인 | 정보변경

고유번호 발급신청 | 비밀번호 재발급신청 | 문서제출 | 제출현황조회 | 인증서관리 | 게시판 | 기타안내

최근접수 *최근 7 영업일 기준입니다.
· 접수 0건 · 유보 0건 · 유보삭제 0건 · 거부 0건 · 오류 0건

최근통지내역
· 알림음 0건 · 수리완료 0건 · 수리거부 0건 · 정정요구 0건

제출인 정보관리 | 문서제출 현황

고유번호 발급신청
DART 고유번호(아이디)가 없으신가요?

비밀번호 재발급신청
비밀번호/비밀번호변경코드를 분실하셨습니까?

공시대상회사 정보변경
공시대상회사의 정보를 변경하시겠습니까?

신청결과 조회
고유번호/비밀번호변경코드 신청결과가 궁금하신가요?

1. 외부감사계약보고 시스템

3.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접속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 발급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외부감사계약 보고시스템** (<http://eacrs.fss.or.kr>)에 접속
- 로그인 시 **'기본정보'**를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DART접수시스템에서 수정하면 자동반영 됨

감사인선임보고서 작성

- 화면 상단의 **'회사·제출서류'** 탭 선택
- 화면 왼쪽에서 **'감사인 선임보고서'**를 클릭하여 양식 작성 후 제출

금융감독원 |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원격지원서비스 [->]

기본정보 **회사·제출서류** 감사인·제출서류 접수현황 공문 및 첨부서류 샘플 다운로드

- 감사인 선임보고서**
- 외감대상 제외신청
-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 감사전 연결 재무제표 제출
- 감사인 지정(제지정) 신청
-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등 제출
-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 (상장법인)

감사인 선임보고서

보고제도 문의 02. 3145. 7763
시스템 문의 02. 3145. 5463

1. 회사개황

1-1 회사명		1-2 회사고유번호	
1-3 법인등록번호		1-4 사업자등록번호(본점)	
1-5 법인구분	사업보고서제출 비상장주식회사	1-5-1 금융회사에 해당 여부	선택 <input checked="" type="checkbox"/>
		1-5-2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 여부	선택 <input checked="" type="checkbox"/>

II. 감사인 선임보고서 제출

1. 회사개황 입력 ①

1. 회사개황			
1-1 회사명	<input type="text"/>	1-2 회사고유번호	<input type="text"/>
1-3 법인등록번호	<input type="text"/>	1-4 사업자등록번호(본점)	<input type="text"/>
1-5 법인구분	사업보고서제출 비상장주식회사 <input type="button" value="v"/>	1-5-1 금융회사에 해당 여부	선택 <input type="button" value="v"/>
		1-5-2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 여부	선택 <input type="button" value="v"/>
1-5에서 유한회사인 경우	1-5-3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 여부	선택 <input type="button" value="v"/>	
	1-5-4 변경일자(1-5-3에서 '예'인 경우) <input <="" td="" type="button" value="?"/> <td>YYYYMMDD <input type="text"/></td> <td></td>	YYYYMMDD <input type="text"/>	
1-6 감사위원회의 설치 여부 <input <="" td="" type="button" value="?"/> <td rowspan="2">선택 <input type="button" value="v"/></td> <td>1-6-1 감사위원회의 설치 대상여부 <input <="" td="" type="button" value="?"/><td>선택 <input type="button" value="v"/></td></td>	선택 <input type="button" value="v"/>	1-6-1 감사위원회의 설치 대상여부 <input <="" td="" type="button" value="?"/> <td>선택 <input type="button" value="v"/></td>	선택 <input type="button" value="v"/>

- 1-5 (법인구분)은 회사의 유형에 맞는 항목 중 선택
- 1-5-1, 2 (금융회사, 대형비상장 주식회사 해당여부) 여부 선택
- 1-6(감사위원회 설치여부) 및 1-6-1(감사위원회 설치대상 여부)를 선택
 -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더라도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1-6 감사위원회 설치여부를 '예'로 선택
 - 「상법」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는 1-6-1 감사위원회 설치 대상 여부를 반드시 '예' 로 선택

II. 감사인 선임보고서 제출

1. 회사개황 입력 ②

1-7 회사의 감사인을 선정하는자 ?	선택	1-7-1 회사의 감사가 없는 회사에 해당 여부 ?	선택			
1-8 당기 계약 감사인명		1-7-2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지 여부	선택			
1-9 감사대상 사업연도	YYYY년 MM월 부터 YYYY년 MM월 까지	1-8-1 감사계약 변경 여부	선택			
1-10 감사계약 체결일자	YYYYMMDD					
1-11 과거 6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 지정여부 ?	전기	2기전	3기전	4기전	5기전	6기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1-7(회사의 감사인을 선정하는 자)를 선택(감사위원회, 감사, 회사)

구분	내용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한 경우 (자율적으로 설치한 경우도 포함)
감사	감사가 감사인을 선정하는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도 포함)
회사	자본금 10억 미만으로 감사가 없는 주식회사 및 정관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않는 유한회사의 경우

- 1-8(당기 계약 감사인명)은 “OO회계법인”, “OO공인회계사감사반” 등으로 입력

II. 감사인 선임보고서 제출

1. 회사개황 입력 ③

1-8 당기 계약 감사인명	<input type="text"/>	1-8-1 감사계약 변경 여부	선택			
1-9 감사대상 사업연도	YYYY년 MM월 부터 YYYY년 MM월 까지					
1-10 감사계약 체결일자	YYYYMMDD					
1-11 과거 6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 지정여부 ?	전기	2기전	3기전	4기전	5기전	6기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1-8-1(감사계약 변경여부)는 아래에서 해당하는 회사의 상황에 맞게 선택

구분	내용
초도	직전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 (외감법상 최초로 외감대상이 된 경우 또는 외감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당해연도에 다시 외감대상이 된 경우)
계속	기존 감사인을 재선임하는 경우
변경	감사인을 교체하는 경우

- 1-11(과거 6개사업연도 중 감사인 지정여부)는 아래와 같이 선택상황에 맞게 선택

구분	내용
자유선임	외부감사대상회사로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지정	증권위(금감원)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사유불문)
해당없음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았거나 법인설립 이전인 경우

II. 감사인 선임보고서 제출

2. 문서제출 ①

2. 제출할 문서 첨부 공문 및 첨부서류 샘플 다운로드

2-1 감사인 선임보고 제출 공문	<input type="text"/>	파일 선택
2-2 감사계약서 사본	<input type="text"/>	파일 선택
2-3 해당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	<input type="text"/>	파일 선택
2-4 감사인 교체 사유	<input type="text"/>	파일 선택
2-5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input type="text"/>	파일 선택
2-6 감사위원회 의사록	<input type="text"/>	파일 선택
2-7 감사인 선임 위원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의사록	<input type="text"/>	파일 선택
2-8 감사인 대리제출에 대한 위임장	<input type="text"/>	파일 선택

제출자료에 대한 책임은 귀사에 있습니다. 동의

접수결과 SMS 수신 핸드폰 번호 - - 수신 미수신

- **회사개항 작성 완료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만 활성화되므로 해당 파일 첨부**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외의 서류가 활성화되는 경우 회사 개항 정보를 다시 확인

II. 감사인 선임보고서 제출

2. 문서제출 ②

2. 제출할 문서 첨부

공문 및 첨부서류 샘플 다운로드

2-1 감사인 선임보고 제출 공문

2-2 감사계약서 사본

2-3 해당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②

2-4 감사인 교체 사유

2-5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2-6 감사위원회 의사록

2-7 감사인 선임 위원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

2-8 감사인 대리제출에 대한 위임장

공문 및 첨부서류 샘플 다운로드

구분	파일명	다운로드
감사보고서등 제출지연 관련	제출지연 제재면제 신청 양식(회사)	다운로드 ↓
	제출지연 제재면제 신청 양식(감사인)	다운로드 ↓
감사인선임 관련	감사인선임보고서 공문	다운로드 ↓
	감사인선임위원회 의사록	다운로드 ↓
	외부감사인 교체사유서	다운로드 ↓
	1-1. 감사인 지정신청 공문(상장예정)	다운로드 ↓
	1-2. 감사의 지정요청서(상장예정)	다운로드 ↓
	2-1. 감사인 지정신청 공문(회사요청)	다운로드 ↓

▪ 공문 및 첨부서류 샘플 다운로드 가능

- 감사인 선임 관련 공문 양식 중 필요한 파일 다운로드

II. 감사인 선임보고서 제출

3. 접수현황

접수번호	보고구분	첨부파일	접수일시	처리상태	비고	처리일자
13000001	감사인 선임보고서			접수완료		
05000003	감사인 선임보고서			처리완료		

- 처리상태는 감사인의 '감사계약체결보고서'의 내용을 확인 후 승인 또는 반송 처리되며, '접수날짜'를 회사의 제출일로 간주
- 외부감사인이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처리상태란에 '감사계약 다트미제출'이라고 표시되며, 동 서류가 제출 되어야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음
⇒ 회사는 추가로 서류를 제출(업로드)할 필요가 없으나 감사인이 계약체결보고를 하도록 요구
- 처리상태가 '반송'일 경우 클릭 후 '반송확인' 창을 통해 반송사유를 확인할 수 있음
- 서류제출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산보안상의 이유로 수정·삭제가 불가하므로 기존과 동일한 절차로 다시 업로드

Ⅲ. 주요 질의사항

Q1. 초도감사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처음으로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대상이 된 회사는

- ①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 ② 선임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증선위(금감원)에 감사인 선임보고를 해야 합니다.
- ③ 회사의 감사인을 선정하는 주체는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이며,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 (자본금 10억원 미만)에는 회사가 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인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등의 선임절차를 준수해야 함
(이 경우 회계법인만 선임 가능)

Q2. 비상장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가결산 결과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등의 외부감사대상 기준 충족여부가 모호한 경우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지?

외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 외부감사대상 기준에 미달할 경우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대상임에도 감사인 선임기한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감사인 선임 절차를 준수하여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II. 주요 질의사항

Q3.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기타 비상장주식회사에 비해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소속 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그 외 비상장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① 감사인 선정시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② 회계법인만 선임 가능(3년 동일 감사인 유지), ③ 감사전재무제표 제출, ④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매년 정기총회 종료후 14일내)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을 통해 직전 사업연도말 소유경영미분리 여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에 한해 ⑤감사인 지정기초자료 신고서(12월 결산법인은 9.14.까지)를 추가 제출합니다.

Q4. 회사는 감사인 선임기한까지 감사계약완료를 보고해야 하는 것인지?

회사는 감사인 선임기한(초도감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 그 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등)까지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완료하고, 선임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선임보고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 (회사의 선임보고 예외) 지정감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상장사(대형비상장, 금융회사 제외)가 전기 감사인을 당기에 다시 선임한 경우, 상장사·대형비상장사·금융회사가 3개 사업연도 중 2·3년차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 감사인은 예외 없이 기한 내 감사계약체결 보고 필요

감사합니다

본 강의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업무자료-회계-외부감사인 선임- 외부감사 FAQ'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